



## 서울시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

수신자 전 회원사

(참조)

제목 전세버스 조세감면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알림 및 찬성의견  
개선 요청

---

1. 전세연 제2022-2호(2022.01.03.)와 관련입니다.

2. 전국전세버스연합회에서는 전세버스 업종 부가가치세 및 취득세에 대하여 타업종과 동일하게 면제(감면)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.

3. 이와 관련, 전세버스 업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특례 및 취득세 감면특례를 마련토록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,

4. 아울러 각 사에서는 금번 법률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법률안에 대하여 찬성 의견이 적극 개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= 아 래 =

가. 입법예고기간

- [의안번호 14193]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('22.01.03.~'22.01.12.)

- [의안번호 14192]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( '21.12.31.~'22.01.09.)

※ 서번호 22- 4호 (2022.01.06.)

나 . 의견 개진 방법

국회 홈페이지(<https://www.assembly.go.kr/assm/userMain/main.do>) 접속 →

입법예고(<http://pal.assembly.go.kr/main/mainView.do>) 클릭 →

법률안명 검색 → 의안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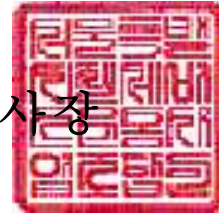
번호 확인후 해당 법률안 클릭 → 의견등록 클릭 → 내용 작성후 등록

[ 조합 홈페이지에서 바로가기 이용 가능 ]

※ 붙임 :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부.

※붙임자료는 조합홈페이지([www.tourbus.or.kr](http://www.tourbus.or.kr))에서 내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. [끝]

서울시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



담 당 박영수 부 장 라영석 실 장 박호동 전무이사 박태환

협조자

시행 서전버조 22- 4호 ( 2022.01.06 ) 접수 ( )  
우 05510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319(교통회관 11층) / <http://www.tourbus.or.kr>  
전화 02-422-0019 전송 02-418-0071 / / 공개

"안전띠는 생명띠 정지선은 생명선"